

2011년 6월 제23호
ISSN 1976-6041(On-Line)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김영식 편집인 조요셉 전화 (031)285-0183 FAX (031)285-0184

권두언

누구를 위한 사법개혁안인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박민영 교수

연구특집

세계각국의 위기관리 체계가 주는 시사점 치안정책연구소 김용민 연구관

산업보안범죄의 제도적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정웅 연구관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경찰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권태형 연구관

치안현장탐구

아동·장애인 등 실종예방, '출생시부터 지문등록'이 정답이다 전남청 여청계장 박송희 경감

연구소 소식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 권두언

누구를 위한 사법개혁안인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박민영 교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위)가 진통 끝에 사법개혁안을 내놓았다. 골자는 법조일원화를 비롯해 검찰시민위원회 및 특별수사청의 신설 등이다. 개혁안에 대해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경찰의 복종의무를 삭제한다는 내용의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분명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복종의무삭제에 警·檢간 이견

반대입장의 논거로 검찰청법상 복종의무가 삭제될 경우 검사가 경찰의 수사개시를 지휘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경찰지휘근거가 사라질 뿐 아니라 수사과 내사의 한계가 모호해져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해당 규정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법상 엄연히 존재하고 헌법상 검사를 통한 영장청구권이 명문에 있는 이상 경찰은 여전히 검찰의 지휘와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반대논거는 수사권조정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조정안에 대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한 첫발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합의라는 평가도 있다.

분명한 것은 수사절차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뿐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핵심이며 성숙한 민주사회로 진화하는 시금석이라는 점이다. 현행 수사절차는 검사의 수사지휘권·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등을 근간으로 한다. 요컨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으로 규정해 수사권의 주체를 검찰에 한정하고 있다. 결국 검사가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독점권 등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를 책임지고 있다. 검사의 이러한 권한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막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검찰은 그동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각종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국민의 신뢰를 많이 상실

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관련 인사들이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졌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소위 '스폰서 검사' 문제도 슬그머니 마무리되는 듯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제도가 법리적인 분석과 전문적 입법평가를 하기에 앞서 과연 원론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에 부응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권위와 복종의 시대가 끝나고 '소통과 화합의 시대'에 들어섰다. 소통은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주의적인 조직문화를 타파할 수 있는 명제다. 소통은 상호이해의 장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토대인 것이다. 권한이 집중된 지금의 검찰의 수사권은 소통과 화합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수사권, 소통·화합의 시대에 맞게

현재 우리사회는 '열린 사회'로 가고 있다. 사개위의 사법개혁안도 민주적 의사결정과 개인의 자유의 신장을 위한 '열린 사회'로 가는 시도이고 이런 취지에서 사개위의 수사권조정안 역시 그동안 논의됐던 최소한의 합의(合意)라 하겠다. 무엇보다 이번 수사권조정안은 수사주체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보다 질 높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작은 단초라 생각된다. 우리는 그간 자주 들어왔던 '뼈를 깎는 자성'이라는 말에 늘 실망하고 있었다. 이 수사권조정안이 수사주체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새로운 수사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는 첫 단추였으면 한다.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후 처음 4년 동안은 작은 죽순만 보이고 모든 성장은 땅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5년째 되는 해에 25미터 높이로 훌쩍 자란다.

우리 경찰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하나가 되어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선진 일류경찰이라는 원대한 꿈을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먼 훗날 후배들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쏟아 경찰발전의 뿌리를 다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PSI**

※본 기고문은 2011. 4. 12 서울경제신문에 기고한 것을 저자인 박민영 교수의 동의하에 요약, 게재하였음.

■ 책임연구과제 논문요약

세계 각국의 위기관리 체계가 주는 시사점

김용민 경찰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미국의 통합형 위기관리 체계

오늘날 세계 각국은 능동적으로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분산형에서 통합형 위기관리체계(사례:美國-NSC,DHS,FEMA)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위기대응의 경우 과거 사후 대응 방식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에 있어 위기의 규모가 커지고 파급효과 또한 신속하게 이뤄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총체적 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다. 긴급사태 관리 관련 조직들의 정책 공조 및 협력, 업무 조정, 신속한 정책 결정과 실행, 통합성, 효과성, 실천성 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통합형 위기관리체계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을 지휘 통제 하는 방안 보다는 각 기관의 기능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정·협조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스라엘 등 특수상황 국가

이스라엘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남과 북이 대처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내용이 많았다.

주변국과의 갈등 및 전쟁 불안이 높다는 측면에서 국가생존위기와 같이 급박한 위기와 위기의 일상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와 대응 측면에서도 전시와 평시를 나누지 않고 항시 전시에 준하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애국심과

충성심, 위기관리에 교육과 훈련이 많이 되어 있으며, 민·군의 위기대응 체계가 명확하며 일관성을 발휘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영국과 일본의 대국민 전파 시스템

영국과 일본의 대국민 전파시스템도 시사점이 크다. 신속한 위기전파만이 이미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국민과 함께 한다는 자세로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위기사태를 직접 홍보하고 함께 대처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선직국일수록 국민 참여도 제고 및 정보 보고 및 전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의 충실한 사후 복구 시스템

영국의 충실한 사후 복구 시스템을 통한 국가 신뢰도 제고도 배울 점이 많다. 런던 테러(2005년 7월) 사고시 ①사후 수습과 관련해 해당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따라 사후 복구가 진행되었으며, ②피해자 사무국을 조기에 설치하는 등 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③사고 유가족 지원 담당 장관을 지정할 정도로 피해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피해자 측과 국가간의 신뢰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매우 크다.

매뉴얼과 법령 정비

선진국의 경우 매뉴얼의 완성도 및 단계별 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다. 특히 과거의 사례로부터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여 대형 참사가 재발하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실패 사례를 포함한 위기 관련 지식을 매뉴얼에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업그레이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 상황 발생시 효과적 대처를 위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매뉴얼로 정리, 매뉴얼에 따른 반복된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여 할 것이다.

사전 예방적 위기관리 훈련

선진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별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는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위기관리 형태로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매뉴얼이 형식적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난 수십 년간 발생한 각종 대형 사건 사고들을 종합하여 만든 예상 시나리오를 토대로 여러 해당 정부기관들과 민간 참여자들과 기관간의 시뮬레이션 훈련이나 Role-Playing 등의 사건 대응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훈련은 꼭 도심 현장에서 대규모로 이뤄질 필요는 없을 것이며, 매뉴얼에 대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타 기관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실제 상황 발생시 일어날 지도 모르는 문제점들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방안도 필요하다.

위기관리 협력 거버넌스

오늘날 다양한 위기상황은 시민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위기관리에 대한 올바른 국민들의 인식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위기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공무원과 시민 사회는 서로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라는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시민단체 등을 소관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을 국가정책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시민 사회간 상호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연락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위기관리분야에 자발적으로 희생한 시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 획득 필요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 획득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의 몇몇 실패 사례로 인해 제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며, 나아가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위기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획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맺은 말

위기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 모든 국가는 국가별로 역사적 환경, 사회적 배경, 문화, 철학적 인식, 대외적 환경, 대내적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정비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과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 위기관리 방식들은 각양 각색으로 정형화된 모범 답안은 없으며, 각 국가가 자신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PSI](#)

■ 책임연구과제 논문요약

산업보안범죄의 제도적 대응방안

정웅 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머리말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21세기에 들어서기까지 지속적인 기술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과 신지식 창출을 통해 자동차와 조선, 정보기술(IT) 등을 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켜왔으며, 최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황에 직면하여서도 정부에서는 녹색환경과 융합기술을 비롯한 첨단·신기술의 연구개발에 끊임없는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산업화 초기에 보여 주었던 노동 생산요소 중심의 양적 경제성장에서 脱殼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였으며 개방형 시장경제체제 하에 세계적 첨단기술을 다수 보유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과거 우리나라는 발전도상국가로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선진국으로부터 때로 불법적 기술수집의 의혹을 받았으나, 이제는 오히려 세계 각국으로부터 첨단기술 유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고 실제 반도체, 화학, 운수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부 국내 기업들의 핵심기술이 해외에 불법유출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 불법유출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국가정보원의 산업스파이 해외 기술유출 자료를 보면, 2004-2010년간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유출하다 적발된 것만 총 2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도별로는 2004년 26건에서 2008년 42건, 2009년 43건으로 최근까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산업보안제도의 동향

산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과 정보를 불법적으로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산업보안제도는 1991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도입한 데서 시작되었지만, 기실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도입은 1986년 우리나라가 미정부와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에 기원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과 산업발전에 따라 우리 첨단 산업기술의 불법적 해외유출에 대한 대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보호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또한 2006년에는 동 법을 보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이 민간의 기업비밀 누설에만 처벌이 한정되고, 각종 법률에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만으로는 산업기술유출의 방지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규제하고,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을 갖춘 미국과 소위 지재입국(知財立國)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들이 주로 사후 대책에 머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법은 사후적 처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영업비밀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10년 3월 31일부로 시행됨으로써 산업보안범죄의 범주가 더욱 넓어졌다. 즉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해서만 가중 처벌한 것에 비해 개정법은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예방을 위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취득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토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산업보안범죄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산업보안범죄의 실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의하면,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총 203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적발된 산업기밀 유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 적발 건수가 2004년 26건에서부터,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 32건, 2008년 42건, 2009년 43건으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표 1>).

<표 1> 연도별 산업기술 해외 유출 현황

단위: 건수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3	26	29	31	32	42	43

자료: 국정원 산업기밀정보센터, “기술유출 통계”, 2010.

산업기술유출이 경쟁기업간의 문제를 넘어 국가차원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첨단 산업기술유출 관련 수사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2004년 15건이던 국내외의 산업기술 불법유출 검거건수가 2005년 19건으로 늘어났고, 2006년 16건으로 다소 안정 양상을 보이다가 다시 2007년 25건, 2008년 72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첨단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2004년 1조원에 못 미치던 것이 2008년에는 15조를 상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8년도 검거실적을 검거인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해외 불법유출 23명, 국내 불법유출 사범은 132명으로 총 15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내유출의 경우는 피해추산 100억 이상-1조 미만이 110명으로 전체 국내 유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외유출의 경우에는 전체 23명 중에 1000억 이상 5명, 1조원 이상은 무려 14명으로서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기술이 해외유출을 겨냥한 범죄자들의 유출목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고부가 첨단기술의 유출 위험이 높다는 것은 ‘고화질 HD영상 수신기’ 제조 핵심기술 중국유출 미수사건(피해예방액, 1조 6천억원), ‘Dental Implagraphy(첨단 의료기기)’ 설계도의 미국계 회사 유출사건(피해추산, 2조 2천억원), ‘PTMEG(첨단섬유 원료)’ 생산기

술 중국유출 미수사건(피해예방액, 1조 2천억원) 등의 해외 유출사례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표 2> 산업기술 불법유출사범 검거 현황(2008)

단위: 명

구 분	총 계	첨단 산업기술				
		1조 이상	1천억 이상	500억 이상	100억 이상	100억 미만
해외유출	23	14	5	1	1	2
국내유출	132	10	41	19	50	12

자료: 경찰청, 2009.

맺 음 말

산업기술 불법유출을 통해 높은 수익을 지향하는 산업보안범죄의 분석과 대응에는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에 기반한 범죄경제학(economics of crime) 시각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범죄자들이 자신의 목적 달성과과정에서 합법적인 활동이 아닌 불법 행동(illegal behavior)을 선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체포되어 처벌받을 가능성과 처벌의 강도(probability and severity of punishment)를 높여 범죄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도록 하는 제도가 설계(design),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응방향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도설계 단계에서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된 법규체계의 정비와 산업보안 수사부서의 확충이 중요하며, 제도집행 단계에서는 산업기술 불법유출 정보·신고시스템의 개선, 관계자간 거버넌스 내지 민관파트너쉽(private-public partnership)에 기초한 범죄대응 협력체계의 구축, 산업보안범죄 방지 홍보·교육활동의 강화 등이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산업기술 불법유출자들이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해 불법적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처벌의 확률은 객관적 확률이 아니라 범죄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확률(subjective probability)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산업보안범죄 방지 홍보와 교육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강력한 차단의지, 엄격한 처벌 사례들을 인식시킴으로써 산업보안범죄를 억제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 이 글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2010)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PSI](#)

■ 책임연구과제 논문요약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경찰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권태형 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들어가며

국가정보화가 추진되면서 민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의 종류와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개발 등을 위해 공공정보를 이용하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활용에 대해 아직까지 별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찰의 공공정보를 파악해 보고 경찰의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경찰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경찰의 모바일 서비스 현황

경찰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트위터(Twitter)를 통해 전국 16개 교통정보센터에서 수집한 도심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웹사이트(m.utis.go.kr)에서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 최적화한 사이버경찰청 모바일(m.police.go.kr)과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m.182.go.kr),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m.lost112.go.kr)를 구축하여 서비스 중에 있다. 지방경찰청 중에서는 부산지방경찰청(bspolice.go.kr)이 모바일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에서는 2007년 1월부터 운전면허응시조회, 운전면허정보조회, 운전면허안내, 학과시험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휴대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아직까지 모바일 경찰서비스는 경찰에서 개발·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민간에서 경찰의 공공정보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서비스를 개발·구축한 경우는 없는 상황이다.

경찰의 모바일 서비스 활용예상 조사결과

권태형(2010)의 연구에서는 경찰 인터넷 서비스들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서비스들에 대해 경찰분야(수사, 교통, 생활안전, 경무)별로 나누어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서비스의 선호도를 기준으로 순위를 살펴보면 서비스 제공시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표>와 같이 스마트폰 사용자(사용예정자 포함)들이 생각하는 선호도에 대해 순위를 정리하였다.

<표> 스마트폰 사용(예정)자의 경찰 모바일 서비스 선호도 순위

순위	분야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경찰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유용(관심)도
1	생안	각종 분실물에 대한 정보의 유용도	95.6%
2	교통	교통정보의 유용도	95.1%
2	경무	사용자 현위치 주변 경찰관서 위치 자동안내에 대한 유용도	95.1%
4	교통	교통표지판 오류 현장제보의 유용도	95.0%
5	경무	경찰관서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에 대한 유용도	93.4%
5	수사	사이버범죄 예방정보의 유용도	93.4%
7	수사	공개수배자에 대한 정보	91.7%
8	생안	범죄예방, 성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 등에 대한 정보의 유용도	86.0%
9	수사	미아·실종자에 대한 정보	82.6%
10	교통	운전면허관련 정보의 유용도	78.5%
11	경무	경찰청 공지사항, 채용공고 등에 대한 관심도	62.0%
12	경무	경찰홍보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53.7%

모바일에서 유용한 경찰의 공공정보

경찰이 현재 모바일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모바일에서 이용하면 효과가 있을 경찰 공공정보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공개수배자 정보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과학수사센터(www.kpsi.go.kr) 홈페이지에서는 중요지명피의자 20명에 대한 수배목록을 볼 수 있다.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터넷에 있는 공개수배자 사진 등을 화면캡처나 복사 등으로 인터넷상에서 피의자 사진 등이 퍼지지 않게 조치하였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단말기 환경에서 화면캡처나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배자 정보를 모바일에서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모바일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신속성과 과급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수배자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m.182.go.kr 실종아동 정보 검색방식 개선

현재 실종아동검색방식은 이름과 특징을 입력하여 검색하도록 되어 있다. 검색 결과가 수십 명을 넘는다면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검색결과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종자의 주요특징을 제시한 메뉴 방식 검색과 주요키워드(실종자 특징 등)를 나열한 검색방식 등과 같이 모바일 환경에 어울리는 검색방식으로도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를 개방한다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실종아동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민간에서 개발되어 무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 사이버범죄 예방정보

사이버범죄 예방정보 알리미 넷두루미(net-durumi.netan.go.kr)에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네탄(wwwi.netan.go.kr)에 신고된 쇼핑몰 사기, 온라인거래 사기에 사용된 휴대폰번호와 계좌번호를 검색할 수 있다. 이 휴대폰번호와 계좌번호를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다면 살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지도정보

경찰 내부망에서는 교통사고지도, 시설물 지도, 성범죄 지도, 공조수사, 외국인 체류지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경찰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지도와 같은 공공정보를 우선 개방하고, 범죄지도와 같이 논란이 예상되는 지도정보는 외국의 시행결과에 따른 효과 등을 참고하여 추후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외에 전국 경찰관서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경찰관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민간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공공정보 제공 방안

첫째, 경찰은 공공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 환경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모바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경찰 공공정보 제공 지침'을 제정하고, 공공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국·관이 참여하는 '경찰 공공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셋째, 공공정보(DB)를 민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국 경찰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DB)는 경찰청 해당 국관기능에서 통합하여 관리해야 하며, 비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경찰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앱 공모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경찰서비스의 창출을 촉진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경찰의 공공정보를 개방하여 모바일 경찰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서비스 특성상 민간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경찰 서비스를 모바일로도 제공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치며

경찰은 조직의 특성상 공공정보 개방이라는 화두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정부와 Government 2.0을 선도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유용한 공공정보를 과감하게 개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모바일 경찰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치안서비스는 향상되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다. 경찰은 국민 곁에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며 지금보다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될 것이다. [PSI](#)

■ 현장의 소리

아동 · 장애인 등 실종예방, ‘출생시부터 지문등록’ 이 정답이다

경감 박송희
전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들 어 가 면 서

2007년 7월, 필자가 가족을 동반하여 남미 칠레에서 2년 6개월간 유학생생활 할 때의 일이다.

외국인 등록을 위해 산티아고 라스폰데스 구청을 방문하였는데 우리부부는 물론 아홉 살, 열한 살에 불과한 우리아이들까지 얼굴 촬영 및 십지지문 등록을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무슨 범죄자라고 어린 아이들까지 십지지문을 찍는지 불쾌감마저 들었다.

그 후 신원 확인시마다 아이들까지 사진과 우수지문이 찍힌 ‘까르넷(우리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했고 국경을 통과할 때는 심지어 아이들과 우리부부가 가족임을 증명하는 대사관 공증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했다. 그때는 그저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불평등한 제도라고 생각했으나 남미지역 전반에 퍼져있는 아동실종과 납치예방을 위해 칠레국민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조치라는 설명을 듣고서야 고개가 끄덕여졌다.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만 10,829명의 아동이 실종되었고 그중 49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세계 초일류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실종되고 영구 미귀가하는 아이들이 수십명씩 생긴다는 것은 분명 아이러니다.

문제 제기

1976년 11살때 서울역에서 무작정 기차를 탔던 김영호(가명)씨는 가족과 생이별한 후, 34년만인 2010년 아버지와 극적으로 재회하였다. 실종시 자신과 부모이름을 알고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모를 찾을 수 없어 거리를 전전하다가 주변 어른들이

다시 지어준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수십년을 살아온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실종된 아동이나 치매노인, 장애인등의 발견을 위해 실종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색하여 무연고자 신원확인을 위해 DNA등을 채취, 전산등록하고 있다.

김영호씨의 경우처럼 실종된 이후 새로운 이름과 주민번호로 행정기관에 등록된 경우, 주민조회는 실익이 없어 친부모를 찾을 유일한 방법은 DNA를 대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DNA 확인 또한 부모가 DNA를 등록하지 않아 대조군이 없거나 이미 사망하여 DNA 자체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실종아동 혼자만의 DNA 정보로는 영원한 迷兒로 남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지문활용과 아동의 권리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萬人不同, 終生不變”의 지문을 갖고 태어난다. 지문활용의 역사는 1880년 스코틀랜드인 폴즈가 “네이처”紙에 범인 식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문 사용을 제안한 이후, 주로 범인을 색출키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디지털기와 IT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지금, 유일무이한 인간의 지문정보는 아파트 현관문을 지문인식으로 간단히 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실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문의 활용에 대한 작금의 사정이 이러한데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자는 선한 목적에 활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1989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지니며, 부모가 누군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뒤 1개월이내 신고의무자가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됨으로써 이루어지고, 주민등록법상 17세가 되어서야 십지지문을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출생시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까지가 신원확인의 死角地帶인 것이다. 새로 태어난 A라는 아이에게 형식적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부여되어 있을 뿐 17세가 되어서 십지지문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는 A가 A임을 증명하는 고유정보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17세 이전에 주민등록상에 A를 B로 둔갑시킨다 한들 그 누가 이를 쉽게 알아낼 수 있겠는가.

UN이 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이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벚꽃 날리는 봄날, 공원에 부모 손잡고 놀러갔던 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치는 순간 장기 실종아동으로 쉽사리 헤어날 수 없는 미궁속에 빠져버리는 것은 어쩌면 현재의 주민등록제도 하에서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실종예방을 위한 제언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결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주민등록법 제24조를 개정하여 출생신고시부터 모든 아이의 십지지문을 등록하고 사진과 우수 업지지문이 찍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얼굴이 바뀌는 점을 감안하여 17세가 될 때까지 매2년에 한번씩 주민등록증을 갱신토록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17세 이후부터는 현행대로 시행하면 된다.

이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기대효과는 여러가지가 있다.

먼저 실종아동에 대한 신원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 사건발생 초기에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고 위 김영호씨의 사례와 같이 실종이후 부모추적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지문이 등록되어 있음으로 인해 무연고자라는 착오로 해외 입양되거나 부모 몰래 해외에 데리고 나가 팔아버리는 국제 인신매매 범죄도 막을 수 있다.

둘째,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보호자가 관계기관에 아이를 대동하여 사진을 찍고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내에서 은밀히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나 영유아 유기행위를 간접적으로 예방하고 부모의 아동보호 의무를 강화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발육 발달로 성인과 구별이 어려운 요즘 주민증으로 신원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 주류나 담배판매, 유흥업소 출입, 성매매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할 수 있고 점점 흉포화 되어가는 청소년 범죄를 조기에 해결하는데도 유리하다. 또한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면 유해물품을 팔거나 성매수를 하는 파렴치한 성인들도 변명의 여지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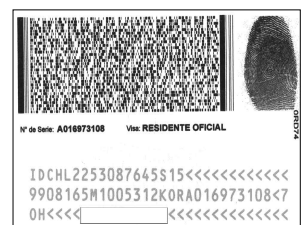
물론 시행초기에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법 개정시 처벌조항 신설 등 개선책을 세우면 될 일이다.

지난 4월 28일 경찰청 주관으로 개최된 “아동·청소년·여성 인권보호 국민토론회”에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해 11년을 기다려왔다”며 실종아동을 찾는데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하는 某 실종아동 아버지의 피맺힌 절규와 눈물이 아직도 내 가슴을 저미게 한다. [PSI](#)

【 칠레 어린이 까르넷(주민등록증) 예시 】



앞



뒤

단국대법학연구소와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치안정책연구소(소장 김영식 경무관)는 2011년 4월 27일 치안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지적재산권의 규제기준」이란 주제로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소장 정주환 교수)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박영준 교수(단국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1주제 발표는 이기수 경정(수사구조개혁실 연구관)이 ‘중국 지적재산권의 형법적 보호’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2주제는 ‘SNS상 저작권 침해문제’란 주제로 단국대 박영준 교수가, 3주제는 정해상 교수가 ‘오토프로그램(BOT) 이용자 책임’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하였다.



치안정책연구소장(경무관 김영식)은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소셜네트워크 시대를 맞이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규제 및 경찰의 합리적·효율적 대응 방안에 대한 학문적 토론의 장이 되었고, 앞으로도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등 학계와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하여 경찰의 치안정책 연구역량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중국 해양대학 법학원 등 방문

치안정책연구소장 등 4명은 2011년 5월 23일에서 26일까지 중국 해양대학, 중국 칭다오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을 방문하였다.

5월 25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소재 중국 해양대학 법학원(원장 장암 서기)을 방문하여 향후 치안정책연구소와 법학원은 국제세미나 공동개최 및 연구자료의 교환, 연구활동에 있어서 상호협력 등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5월 25일 칭다오시 공안국(부국장 여동풍)을 방문하여 한국 관광객과 칭다오시 주재 한국인 보호문제 및 증가하는 범죄 발생에 대하여 한-중 경찰의 치안협력방안에 대한 논의하였고, 출입국관리국(국장 왕지용)을 방문하여 외국인 체류 및 불법체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국제범죄 공동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위촉 및 용역(지정·자유)연구과제 선정

◆ 위촉연구과제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위원
1	치안종합성과평가제도 수용도 제고방안에 관한연구	방통대 이선우교수
2	경찰 CCTV 장소·용도별 장비 규격 및 영상통합관리 방안 연구	한세대 유대현교수
3	경찰서 경제팀 인사재배치 효과	한양대 우하영교수
4	개도국 사이버수사기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해양대 최정호교수
5	형소법·행정법 원리가 교차하는 경·검분야 연구	청주대 조병선교수

◆ 용역(지정)연구과제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위원
1	「경찰의 날」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변경 가능성 검토	건국대 이상호교수
2	통일대비 치안인프라 구축 방안	통일교육원 고성호박사
3	지역경찰 순찰근무의 효율성 검토로 적정 소요인력 산출	용인대 이상원교수
4	「이동 성폭력 전문가 참여제」 성과 및 발전 방안	백석대 박종선교수
5	경찰상 암수범죄 추정방법 및 최소화 방안 연구	아칸소대 이창훈교수

◆ 용역(자유)연구과제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위원
1	치안정책연구소 발전방안 연구	동국대 임준태교수
2	다양한 교통수단의 공존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선 연구	도로교통공단 명효희박사
3	교통약자를 위한 지능형 안전시설 설치방안	한성대 남두희교수
4	경찰의 범죄 예방 및 수사목적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파악의 허용과 그 한계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박혜영 박사
5	경찰의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방안	인천대 김계원교수
6	광의의 형사절차의 통합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보안처분절차와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계명대 김혜경교수

연구소 동정

◆ 권태형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2011년 4월 6일과 12일에 경찰대학 경감기본교육과정 (158기) 교육생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의 중

요성’에 대한 제목으로 강의하였고, 5월 18일에 경정기본교육과정(160기) 교육생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의 이해’란 주제로 강의하였다.

◆ 이상수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2011년 4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1년 부패방지 정책 개발”전문가 간담회와 6월 1일 “청렴글짓기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다. 2011년 5월 한국행정연구원 주최 “공직자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전관예우 관행 개선방안”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 “경찰 지구대 및 파출소의 근무인력의 성과관리” 세미나에 참석하여 토론하였다. 또한 4월 22일 한국행정학회 분과연구회 『경찰발전연구회 발기준비모임』 회의를 주최하였으며, 6월 24일 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경찰 조직문화 평가모형 개발”을 발표할 예정이다.

◆ 유동열 선임연구관(안보대책연구실)은 5월 26일(목) 서울 코리어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열린 국가정보학회(회장 송대성) 주관 “국정원 창설 50주년 기념 학술회의: 정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정보발전전략”에 초청되어 제1주제 국가안보와 국가정보에 대해 토론하였다. 6월 1일(수) 서울 프레스센터 회의장에서 개최된 북한민주화네트워크(위원장 유세희) 주관 안보학술세미나에서 제3주제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 정 옹 연구관(범죄수사연구실)은 2011년 5월 20일 한국경찰연구학회(회장 이영남) 주관 학술세미나에서 “북한테러억제를 위한 전략물자 통제체제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연구소 인사

<전입>

김원환 총경은 2011년 5월 9일 연구소 정책기획 연구실 연구관으로 발령되었다. 김혁 경감은 2011년 5월 25일 연구소 생활안전대책 연구실로 업무지원 발령 되었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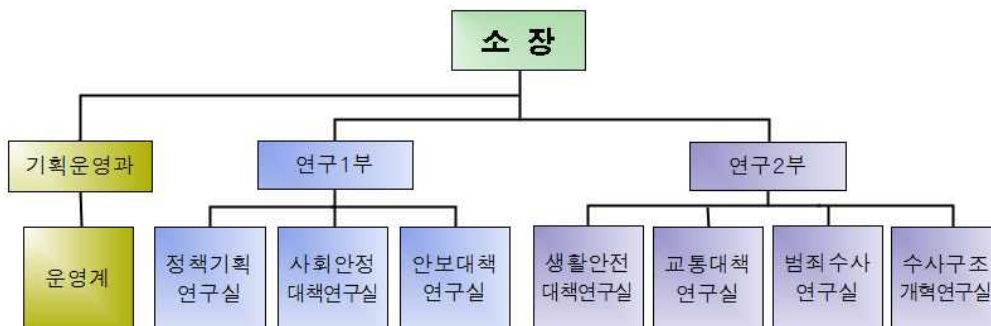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서	담당 업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
교통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연구소내 사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섭외 업무

치안정책연구소 조직도



- ▶ ‘현장의 소리’에 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 드립니다.
- ▶ 현장에서 느낀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앞으로도 일선 경찰관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김학신 연구관

편집위원 : 김지환, 조은순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031-283-0181 (경비) 61-2474
- e-mail: webmaster@psi.go.kr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내용》

- 이름, 근무지, 연락처,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기타 치안정책리뷰 발간에 관련된 의견

《보내실 곳》

- 인터넷 : webmaster@psi.go.kr
- 내부망 :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김지환

【 공 지 】

전국 현직 경찰관 중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은 학위논문을 1부 보내주시면 치안정책 발전의 연구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